

 보건복지부		보 도 참 고 자 료	
배 포 일	2019.3.5 / (총 3 매)	담당부서	보육기반과
과 장	김 우 중	전 화	044-202-3580
담 당 자	임 세 희		044-202-3581

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, 어린이집 방문, 미세먼지 대응 현황 점검

- 비상저감조치 내린 세종시 어린이집 대응 상황 점검 및 영유아 건강 보호 당부 -

-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3월 5일(화) 연일 계속되는 최악의 미세먼지 속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소재의 ‘연기어린이집’을 방문하였다.
- 권덕철 차관은 어린이집 내 공기청정기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, ‘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’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, 영유아의 건강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다.
-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, 미세먼지 나쁨(고농도 발생 단계) 이상일 경우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한편,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, 시·도지사의 휴원 권고가 있을 경우 학부모에게 등원 여부를 선택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- 한편, 보건복지부는 앞서 '18년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약 1만5000개소의 어린이집에 약 5만3500대의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.

<붙임> 1. 미세먼지 단계별 어린이집 대응요령

붙임 1

미세먼지 단계별 어린이집 대응요령

단계	대응요령
평시 사전준비사항 포함	• 평상시 환기는 하루 두 번(오전, 오후) 이상 30분씩 실시 • 공기청정기 관리 (내부 필터 교체 주기 점검, 외부 필터 청소, 바람 흡입구 및 토출구 먼지 제거 등) • 미세먼지 ‘나쁨’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(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) • 환기시설은 수시로 청소 (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, 3~4시간 사용 시 2주일에 1회 이상 권장) • 월 1회 이상 천장, 벽면,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 청소 •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•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•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, 대응조치, 행동요령을 지도 •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활동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- 대체활동 전환 기준 및 대체안(실내체육, 실외활동단축, 일정연기 등) 마련 •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·유아 관리대책 마련 - 현황 파악, 위생 점검 및 건강체크,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• 보건용 마스크, 상비약 등 비치 및 비치여부 확인 •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(PM_{10} $100\mu g/m^3$) 준수 • 실내 미세먼지 권고기준($PM_{2.5}$ $70\mu g/m^3$) 준수 노력
고농도 예보 익일예보 “나쁨”이상	• 온라인 게시판, 안내문, 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• 익일 예정된 실외활동에 대한 점검 (실내활동으로 대체여부 검토 등) •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※ 에어코리아(airkorea.or.kr), ‘우리동네대기질’ 모바일 앱 활용

단계	대응요령
고농도 발생 PM ₁₀ 81이상 또는 PM _{2.5} 36이상 1시간 지속	- 미세먼지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, 기관 내 상황 전파 - 영·유아 대상 행동요령* 교육 및 실천 * 외출자제, 외출시 마스크쓰기, 깨끗이 씻기 등 실외활동 자제(실내수업 대체), 바깥공기 유입 차단(창문닫기) -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·유아 관리대책 이행 - 실내공기질 관리(예 : 공기청정기 가동, 물걸레질 청소 등)
주의보 PM ₁₀ 150이상 또는 PM _{2.5} 75이상 2시간 지속	실외활동 단축 또는 금지, 필요시 등·하원 시간 조정 등 검토 ※ 체육활동, 현장학습 등을 실내활동으로 대체 - 시설 내 기계, 기구류 세척, 식재료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
비상저감조치 PM _{2.5} 주의보 수준 유사	- 필요시 임시 휴원 및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* (요건) ① 내일 ‘매우나쁨’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, ②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(150μg/m³이상, 2시간)가 발령될 경우 ※ 다만, 휴원 등 권고시에도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, 어린이집에서 가정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‘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’ 및 ‘등원 자제’ 사전 안내 (미등원시에도 출석 인정) - 차량 운행제한 협조 * 통학차량 중 5등급 차량 확인 및 운영 자제
경보 PM ₁₀ 300이상 또는 PM _{2.5} 150이상 2시간 지속	실외활동 금지 - 등·하원 시간 조정, 임시 휴원 조치 검토 ※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응 요령과 동일 -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- 시설 내 기계, 기구류 세척, 식재료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